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99.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9년도분 시세(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함.

□ 주요골자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주민세(균등할)과세면제, 사망피해 가족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토지분)과세면제, 수해로 인하여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에는 자동차세 과세 면제.

□ 검토의견

○ 법령적합성

-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에 근거한 것으로 동법 동조항에 의해 지방세 감면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내용타당성

본 동의안 의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세입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과 둘째, 지방세 감면대책이외의 세제지원책 실시 여부임.

- 첫째, 세입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의 경우 본 동의안에 의하면 지방세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약 1억7천만원에 예상됨. 이에 따른 세입부족분은 모토롤라 코리아 파주 공장이 대만에이에스이코리아(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해당 소득분 주민세와 과점주주 취득세 약 29억원에 의해 그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둘째, 지방세 감면대책이외의 세제지원책 실시 여부도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및 체납채분 유예 등 기타 지원책이(추계자료 참고) 마련되어 있어 동 동의안은 내용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449호
----------	-------

제출년월일 : 199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수정이유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와와 지방세과세면제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안의 과세면제세부내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의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육부지가 유실 또는 매몰 되었을 때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로 변경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대한수정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과세면제세부내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가축의 폐사·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과세면제, 사육부지가 유실 또는 매몰 되었을 때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수정안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⑤ 가축의 폐사·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과세면제, <u>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의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u>	⑤ 가축의 폐사·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과세면제, <u>사육부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을 때 종합토지세 과세면제</u>